

大田直轄市公園條例中改正條例案

議案 番號	442
----------	-----

提出年月日 : 1994. 6

提 出 者 : 大田直轄市長

1. 提 案 理 由

都市公園法改正('93. 8. 5 法律 第4571號)에 맞추어 綠地의 占用許可 對象의 擴大와 對民行政의 便宜圖謀 및 行政能率의 向上을 爲하여 不合理한 事項을 合理的이고 效率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主 要 骨 子

- 가. 綠地의 占用許可中 地上에 設置할 수 있는 것은 進入道路뿐이 있으나 그 範圍를 具體的으로 擴大 調整 (案第3條)
- 나. 公園施設의 安全性을 圖謀하기 爲하여 定期點檢等 必要한 措置를 취하도록 規定 (案第6條의 2)
- 다. 公園施設中 運動施設을 使用할 境遇 使用料 賦課徵收에 對하여 大田直轄市 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에 準하여 徵收토록 規定코자함.(案第12條 第2項)
- 라. 公園施設中 敎養施設(圖書館)의 新設로 因하여 敎養施設 使用料, 관리위탁료의 징수 規定을 明確히 하고자함. (案第12條 第3項)
- 마. 公園등의 占用·使用料 徵收 및 公園管理事務에 所要되는 經費를 보전하기 爲해 當해 구청장에게 收入金額의 100분의 30을 교부(案第12條 第4項)
- 바. 公園 占·使用料 減免중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直接公用, 公共用 또는 公益으로 使用할 때는 占·使用料를 면제하고, 기타 公익사업은 占用料의 2분의 1을 減免(案第14條)
- 사. 시설녹지 점용허가 신청서 및 허가증 서식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본조례 시행규칙에 신설 시행코져함. (案第15條의 3)
- 아. 公園 및 公園施設 使用料 및 관리위탁료의 種別에 敎養施設을 삽입코자함(案別표2, 3)
- 자.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공원시설의 인·허가와 위탁수수료의 효율을 합리적으로 조정(案 別표5)

3. 參考事項 (關聯法規)

- 都市公園法 第6條, 第6條의 2, 第12條의 2, 第15條, 第17條
- 都市公園法 施行令 第5條, 第6條
- 都市公園法 施行規則 第12條
- 公衆衛生法 施行規則 第15條의 2
- 都市計劃施設 基準에 관한 規則 第8條
- 地方財政法 第82條, 第83條
- 地方財政法 施行令 第88條, 第99條
- 大田直轄市 公有財產管理條例 第3條, 第23條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4호중 “순경”을 “의무경찰”로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 사용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대전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시설물은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사유지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시설물은 협의에 의하여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1. 공원시설물 사용에 따른 옥내광고물 설치
2. 물품의 판매, 영화촬영(텔레비전, 방송, 기타포함)을 하고자 할 때
3. 식물 또는 곤충의 채집
4. 공원 또는 녹지 시설물의 사용(단, 운동시설은 “대전직할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공공도서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대상
6. 기타 공원또는 녹지를 점용. 사용하고자 할 때

동조 제6항중 제2호,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2. 공원또는 녹지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4. 공원또는 녹지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 제6조 제1항 제11조의2호 및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점용허가의 대상으로 다음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 2(공원시설의 안전조치) 공원관리청과 공원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는 공원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시설에 대한 년1회 이상의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7조 조제목중 “비행정청의”를 “공원관리청이 아닌자의”로 하고, 본문 중 “허가”를 “인가”로 한다.

제10조 조제목중 “비행정청의”를 “공원관리청이 아닌자의”로 하고, 본문 중 “입장사용료”를 “입장료 또는 사용료”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10%”를 “10퍼센트”로하고 단서 및 제2항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사유지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운동시설의 사용은 체육에 공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야하며 사용료는 “대전직할시 체육시설관리운용조례”에서 정한바에 준하여 부과, 징수 하여야 한다.

③교양시설(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준한다.

④공원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위탁료·입장료·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으로 사용할 때는 점·사용료를 면제하고, 기타의 공익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제15조의 2 제1항중 “공원점용허가”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로 하고, “수허가자”를 “허가를 받은자가”로 하며, 제2항중 “공원 점용허가”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로하고, “공원점용허가대장”을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대장”으로 한다.

제15조의 3을 삭제한다.

제15조의4 제1항중 “영 제8조”를 “영 제6조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중 “영제8조”를 “영제6조 제2항제3호”로 하며, “지상도로”를 “진입도로”로 하고, 제1호중 “8미터”를 “8미터미만”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허가, 점용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와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공원시설 사용료

종 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운 동 장	1회당 3.3㎡당	10원	경합자가 있을때에는 일반공개입찰에 의한 계약금액으로한다
사 진 촬 영 (상시영리행위)	1인 1년	100,000원	
영 화 촬 영	주간 1회당	50,000원	야간은 주간의 2배
녹 화	1시간당	10,000원	시간초과마다 5,000원 가산
야외음악당	1 일(09:00-22:00) 주간(09:00-18:00) 야간(18:00-22:00)	30,000원 20,000원 10,000원	
유 희 시 설 운 동 시 설 교 양 시 설		시장이 별도 정함.	
공원시설물 사용 에 따른 옥내광고 물 설치		"	
물품의 판매	1일물품판매(전람회, 전시등)및 유사 목적행위시	10,000원	
공원시설물의 사 용(매점, 휴게소)	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함	계약금액	

(별표 3)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료

종 별	단위기준	금 액	비 고
운동, 교양시설	영업목적시	전체수입액의 10/100	
위탁료	영업목적이외	당해 재산가액의 1/100	
유희시설위탁료		전체수입액의 10/100	

(별표4)

공 원 점 용 료

점 용 대 상	기 준	점용료	비 고
1.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전기통신설비	당해또는 인근 유사토지에 대한 최근 공시지가	5/100	
2.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공 동구및 이와 유사한 시설	"	5/100	
3. 가설공작물및 이와 유사한 시설	"	5/100	
4. 전주, 전선, 변전소	"	5/100	
5. 기존 시설물	"	5/100	
6. 형질변경, 토석채취, 죽목의 벌채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	○ 죽목, 토석채취 : 산지근처의 시가에서 채굴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	70/100	
	○ 토지형질변경 : 당해 또는 인근 유사토지에 대한 최근 공시지가	5/100	
7. 노외주차장, 선착장	당해또는 인근 유사토지에 대한 최근 공시지가	5/100	
8.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배수시설	"	5/100	
9. 기타 공원점용	"	전각호에 준하여산 정한금액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신청수수료 : 대전직할시 수입증지로 납부

(별표5)

수 수 료

구 분	단 위 기 준	금 액	비 고
인. 허가 및 위탁 신청	200m ² 미만	9,000원	수수료는 대전 직할시 수입증지 로 납부함.
	200m ² 이상 ~ 300m ² 미만	10,000원	
	300m ² 이상	15,000원	
	300m ² 이상	15,000원	
점용허가신청		8,000원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p> <p>3. 군인: 하사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순경을 말한다.</p> <p>4. 어른: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서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하사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순경을 말한다.</p> <p>제3조(점용과사용허가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직할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시설물은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사유지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시설물은 협의에 의하여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광고물등의 설치</u> 2 - 3(생략) 4. <u>공원시설물의 사용</u> 5. <u>전기통신설비, 도로, 교통, 철도, 궤도, 노외주차장 및 이와 유사 시설 설치</u> 6. <u>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및 이와 유사 시설 설치</u> 7. <u>가설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u> 8. <u>형질변경, 토석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u> 9. <u>기타 공원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할 때</u> <p>② ~ ⑤ (생략)</p>	<p>제2조(정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 ----, <u>의무경찰을</u> ----- 4. ----- ----- ----- <u>의무경찰을</u> ----- <p>제3조(점용과사용허가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사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원시설물 사용에 따른 옥내 광고물 설치</u> 2 - 3 (현행과 같음) 4. <u>공원 또는 녹지시설물의 사용</u> (단, 운동시설은 "대전직할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공공도서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u>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대상</u> (삭 제) (") (") 6. <u>기타 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사용하고자 할 때</u> <p>② ~ ⑤ (현행과 같음)</p>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점용·사용허가등을 하지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공원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때</u> 3. (생략) 4. <u>공원의 미관을 해칠우려가 있는 경우</u> 5. <u>영제6조 제11의2호에 규정된 점용허가의 대상으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u> <p>가~사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생략) <p>(신 설)</p> <p>제7조(<u>비행정청의</u> 공원조성자격)</p> <p>시장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공원 시설의 설치를 허가 할 수 있다.</p>	<p>⑥-----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공원또는 녹지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때</u> 3. (현행과 같음) 4. <u>공원또는 녹지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u> 5. <u>영제6조 제1항 제11의2호 및 제2항 제4호에 규정된-----</u> <p>-----</p> <p>가~사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현행과 같음) <p><u>제6조의2 (공원시설의 안전조치)</u> <u>공원관리청과 공원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는 공원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시설에 대한 년1회이상의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u></p> <p>제7조(<u>공원관리청이 아닌자의</u> 공원 조성자격)</p> <p>----- ----- 인가 -----</p>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비행정청의 입장료및 사용료 징수) 공원사용을 집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시설의 입장, 사용자로부터 <u>입장사용료를</u> 징수 할수 있다.</p>	<p>제10조(<u>공원관리청이 아닌자의</u> 입장료및 사용료 징수) ----- ----- ----- -----<u>입장료또는 사용료를</u> -----.</p>
<p>제12조(공원등의점용. 사용료)①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 사용료는 국유 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등을 기준으로하여 정하되 점용. 사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2및 별표4와같다 다만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용 하는 경우 전년도보다 <u>10%이상</u> 점용료가 증가할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인상율은 별표2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p>	<p>제12조(공원등의 점용. 사용료)①-- ----- ----- ----- ----- ----- -----<u>10퍼센트</u> ----- -----</p>
<p>(신 설)</p>	<p><u>단, 사유지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u></p>
<p>· 다음 (생 략)</p>	<p>·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u>②운동시설의 사용은 체육에 공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야하며 사용료는 "대전직할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에서 정한바에 준하여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②공원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공원점용허가대장을 비치하여 허가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한다.</p> <p>제15조의3(녹지의 점용허가) ①영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내의 지하에 시설물을 설치하고자하는 자와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를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 녹지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시설녹지점용을 허가하였을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한다.</p> <p>제15조의4(녹지점용허가시설의 설치 기준) ①영제8조 규정에 의하여 녹지내 지하에 설치할수있는 시설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②공원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공원또는녹지점용허가대장을 -----.</p> <p>(삭 제)</p> <p>제15조의4(녹지 점용허가 시설의 설치기준) ①영제6조제2항----- ----- -----.</p>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p>1. (생략)</p> <p>2. (생략)</p> <p><u>②영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설치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u></p> <p>1.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소로 3류(8미터)이하로하되, 그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한다.</p> <p>2 - 6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u>②영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u></p> <p>1. ----- -----(8미터미만)----- -----</p> <p>2 - 6 (현행과 같음)</p>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p>(별표 1) <제정 92. 8. 14 조례 제2234호></p> <p style="text-align: center;">공원일공원시설사용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종 목</th> <th>기 준</th> <th>사 용 료</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공 동 장</td> <td>1회당 3.3㎡당</td> <td>10원</td> <td>정합자가 있을 때에는 일반공원시설 사용료에 대한 계약금으로 한다.</td> </tr> <tr> <td>장 의 설 치</td> <td>1인 1년</td> <td>100,000원</td> <td></td> </tr> <tr> <td>인 의 설 치</td> <td>주간 1회당</td> <td>50,000원</td> <td>야간은 주간액 2배</td> </tr> <tr> <td>녹 화</td> <td>1시간당</td> <td>10,000원</td> <td>시간초과마다 5,000원 가산</td> </tr> <tr> <td>야외음악당</td> <td>1일(09:00~22:00)</td> <td>30,000원</td> <td></td> </tr> <tr> <td></td> <td>주간(09:00~18:00)</td> <td>20,000원</td> <td></td> </tr> <tr> <td></td> <td>야간(18:00~22:00)</td> <td>10,000원</td> <td></td> </tr> <tr> <td>유 의 시 설</td> <td></td> <td>사 장 이 별 도 정 함</td> <td></td> </tr> <tr> <td>공 동 조 양 시 설</td> <td></td> <td>사 장 이 별 도 정 함</td> <td></td> </tr> <tr> <td>제3조 1항 1</td> <td>친근 도시정비도구</td> <td>100/100</td> <td></td> </tr> <tr> <td>조 경</td> <td>정액</td> <td></td> <td></td> </tr> <tr> <td>제3조 1항 2</td> <td>1일 공공용시설임대</td> <td>10,000원</td> <td></td> </tr> <tr> <td>조 경</td> <td>전시등 및 유사유형 설치시</td> <td>이상</td> <td></td> </tr> <tr> <td>제3조 1항 4</td> <td>임대 경영임대 또는 임대</td> <td>계약금액</td> <td></td> </tr> <tr> <td>조 경</td> <td>수위계측에 의한</td> <td></td> <td></td> </tr> <tr> <td>(의정, 휴게소)</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종 목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공 동 장	1회당 3.3㎡당	10원	정합자가 있을 때에는 일반공원시설 사용료에 대한 계약금으로 한다.	장 의 설 치	1인 1년	100,000원		인 의 설 치	주간 1회당	50,000원	야간은 주간액 2배	녹 화	1시간당	10,000원	시간초과마다 5,000원 가산	야외음악당	1일(09:00~22:00)	30,000원			주간(09:00~18:00)	20,000원			야간(18:00~22:00)	10,000원		유 의 시 설		사 장 이 별 도 정 함		공 동 조 양 시 설		사 장 이 별 도 정 함		제3조 1항 1	친근 도시정비도구	100/100		조 경	정액			제3조 1항 2	1일 공공용시설임대	10,000원		조 경	전시등 및 유사유형 설치시	이상		제3조 1항 4	임대 경영임대 또는 임대	계약금액		조 경	수위계측에 의한			(의정, 휴게소)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공원시설 사용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종 목</th> <th>기 준</th> <th>사 용 료</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공 동 장</td> <td>1회당 3.3㎡당</td> <td>10원</td> <td>정합자가 있을 때에는 일반공원시설에 의한 계약금으로 한다.</td> </tr> <tr> <td>사 진 활 영 (상시열리행위)</td> <td>1인 1년</td> <td>100,000원</td> <td></td> </tr> <tr> <td>영 화 활 영</td> <td>주간 1회당</td> <td>50,000원</td> <td>야간은 주간액 2배</td> </tr> <tr> <td>녹 화</td> <td>1시간당</td> <td>10,000원</td> <td>시간초과마다 5,000원 가산</td> </tr> <tr> <td>야외음악당</td> <td>1일(09:00~22:00)</td> <td>30,000원</td> <td></td> </tr> <tr> <td></td> <td>주간(09:00~18:00)</td> <td>20,000원</td> <td></td> </tr> <tr> <td></td> <td>야간(18:00~22:00)</td> <td>10,000원</td> <td></td> </tr> <tr> <td>유 의 시 설</td> <td></td> <td>사 장 이 별 도 정 함</td> <td></td> </tr> <tr> <td>공 원 시 설 물 사 용 에 따 른 유 의 공 고 물 설 치</td> <td></td> <td>-</td> <td></td> </tr> <tr> <td>활 영 의 관 계</td> <td>1일물품판매(건강, 전시등) 및 유사 목적행위시</td> <td>10,000원</td> <td></td> </tr> <tr> <td>공 원 시 설 물 의 사 용 (예정, 휴게소)</td> <td>일반경영임대 또는 수위계측에 의한</td> <td>계약금액</td> <td></td> </tr> </tbody> </table>	종 목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공 동 장	1회당 3.3㎡당	10원	정합자가 있을 때에는 일반공원시설에 의한 계약금으로 한다.	사 진 활 영 (상시열리행위)	1인 1년	100,000원		영 화 활 영	주간 1회당	50,000원	야간은 주간액 2배	녹 화	1시간당	10,000원	시간초과마다 5,000원 가산	야외음악당	1일(09:00~22:00)	30,000원			주간(09:00~18:00)	20,000원			야간(18:00~22:00)	10,000원		유 의 시 설		사 장 이 별 도 정 함		공 원 시 설 물 사 용 에 따 른 유 의 공 고 물 설 치		-		활 영 의 관 계	1일물품판매(건강, 전시등) 및 유사 목적행위시	10,000원		공 원 시 설 물 의 사 용 (예정, 휴게소)	일반경영임대 또는 수위계측에 의한	계약금액	
종 목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공 동 장	1회당 3.3㎡당	10원	정합자가 있을 때에는 일반공원시설 사용료에 대한 계약금으로 한다.																																																																																																																		
장 의 설 치	1인 1년	100,000원																																																																																																																			
인 의 설 치	주간 1회당	50,000원	야간은 주간액 2배																																																																																																																		
녹 화	1시간당	10,000원	시간초과마다 5,000원 가산																																																																																																																		
야외음악당	1일(09:00~22:00)	30,000원																																																																																																																			
	주간(09:00~18:00)	20,000원																																																																																																																			
	야간(18:00~22:00)	10,000원																																																																																																																			
유 의 시 설		사 장 이 별 도 정 함																																																																																																																			
공 동 조 양 시 설		사 장 이 별 도 정 함																																																																																																																			
제3조 1항 1	친근 도시정비도구	100/100																																																																																																																			
조 경	정액																																																																																																																				
제3조 1항 2	1일 공공용시설임대	10,000원																																																																																																																			
조 경	전시등 및 유사유형 설치시	이상																																																																																																																			
제3조 1항 4	임대 경영임대 또는 임대	계약금액																																																																																																																			
조 경	수위계측에 의한																																																																																																																				
(의정, 휴게소)																																																																																																																					
종 목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공 동 장	1회당 3.3㎡당	10원	정합자가 있을 때에는 일반공원시설에 의한 계약금으로 한다.																																																																																																																		
사 진 활 영 (상시열리행위)	1인 1년	100,000원																																																																																																																			
영 화 활 영	주간 1회당	50,000원	야간은 주간액 2배																																																																																																																		
녹 화	1시간당	10,000원	시간초과마다 5,000원 가산																																																																																																																		
야외음악당	1일(09:00~22:00)	30,000원																																																																																																																			
	주간(09:00~18:00)	20,000원																																																																																																																			
	야간(18:00~22:00)	10,000원																																																																																																																			
유 의 시 설		사 장 이 별 도 정 함																																																																																																																			
공 원 시 설 물 사 용 에 따 른 유 의 공 고 물 설 치		-																																																																																																																			
활 영 의 관 계	1일물품판매(건강, 전시등) 및 유사 목적행위시	10,000원																																																																																																																			
공 원 시 설 물 의 사 용 (예정, 휴게소)	일반경영임대 또는 수위계측에 의한	계약금액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공원시설의 관리 위탁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종 목</th> <th>단 위 기 준</th> <th>금 액</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공 동 시 설</td> <td>영업목적시</td> <td>전체수입액의 10/100</td> <td></td> </tr> <tr> <td>관 련 도</td> <td>영업목적외</td> <td>당해 예산액의 1/100</td> <td></td> </tr> <tr> <td>유 의 시 설 위탁료</td> <td></td> <td>전체수입액의 10/100</td> <td></td> </tr> </tbody> </table>	종 목	단 위 기 준	금 액	비 고	공 동 시 설	영업목적시	전체수입액의 10/100		관 련 도	영업목적외	당해 예산액의 1/100		유 의 시 설 위탁료		전체수입액의 10/100		<p>(별표 3)</p> <p style="text-align: center;">공원시설의 관리 위탁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종 목</th> <th>단 위 기 준</th> <th>금 액</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공 동, 조 양 시 설 위탁료</td> <td>영업목적시</td> <td>전체수입액의 10/100</td> <td></td> </tr> <tr> <td>영업목적외</td> <td>당해 예산액의 1/100</td> <td></td> </tr> <tr> <td>유 의 시 설 위탁료</td> <td></td> <td>전체수입액의 10/100</td> <td></td> </tr> </tbody> </table>	종 목	단 위 기 준	금 액	비 고	공 동, 조 양 시 설 위탁료	영업목적시	전체수입액의 10/100		영업목적외	당해 예산액의 1/100		유 의 시 설 위탁료		전체수입액의 10/100																																																																																						
종 목	단 위 기 준	금 액	비 고																																																																																																																		
공 동 시 설	영업목적시	전체수입액의 10/100																																																																																																																			
관 련 도	영업목적외	당해 예산액의 1/100																																																																																																																			
유 의 시 설 위탁료		전체수입액의 10/100																																																																																																																			
종 목	단 위 기 준	금 액	비 고																																																																																																																		
공 동, 조 양 시 설 위탁료	영업목적시	전체수입액의 10/100																																																																																																																			
	영업목적외	당해 예산액의 1/100																																																																																																																			
유 의 시 설 위탁료		전체수입액의 10/100																																																																																																																			

신 구조 문 대비 표

현행	개정안																																																																										
<p>(별표 4) (개정 제28조제4항제233호) 공원접용료 (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항목대상</th> <th>기준</th> <th>정액</th> </tr> </thead> <tbody> <tr> <td>1. 도로, 교량, 보도, 인도, 전신통신선리</td> <td>당해 또는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최근 공시지가</td> <td>5/100</td> </tr> <tr> <td>2.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풍동구획 이외 유사한 시설</td> <td>-</td> <td>5/100</td> </tr> <tr> <td>3. 가설 건축물 및 기타 유사한 시설</td> <td>-</td> <td>5/100</td> </tr> <tr> <td>4. 관공, 관천, 연천소</td> <td>-</td> <td>5/100</td> </tr> <tr> <td>5. 각종 시설물</td> <td>-</td> <td>5/100</td> </tr> <tr> <td>6. 방갈로, 토지주택(타)에 대한 임대료</td> <td>○ 조경 토지주택: 당해 공시지가에서 차감된 공시가격에 의한 금액 ○ 토지주택임대: 당해 또는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최근 공시지가</td> <td>70/100 5/100</td> </tr> <tr> <td>7. 노회 주택상, 전차상</td> <td>당해 또는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최근 공시지가</td> <td>5/100</td> </tr> <tr> <td>8. 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수하 구조시설 및 구조물 구조시설</td> <td>-</td> <td>5/100</td> </tr> <tr> <td>9. 기타 공원접용</td> <td>-</td> <td>신구조에 준하여 결정함</td> </tr> </tbody> </table> <p>세입용허가신청수수료: 대면신청시 수입증서로 납부 세외지급용수수료 또는 공회계정용료의 준하여 산정함</p>	항목대상	기준	정액	1. 도로, 교량, 보도, 인도, 전신통신선리	당해 또는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최근 공시지가	5/100	2.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풍동구획 이외 유사한 시설	-	5/100	3. 가설 건축물 및 기타 유사한 시설	-	5/100	4. 관공, 관천, 연천소	-	5/100	5. 각종 시설물	-	5/100	6. 방갈로, 토지주택(타)에 대한 임대료	○ 조경 토지주택: 당해 공시지가에서 차감된 공시가격에 의한 금액 ○ 토지주택임대: 당해 또는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최근 공시지가	70/100 5/100	7. 노회 주택상, 전차상	당해 또는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최근 공시지가	5/100	8. 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수하 구조시설 및 구조물 구조시설	-	5/100	9. 기타 공원접용	-	신구조에 준하여 결정함	<p>(별표 4) 공원접용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항목대상</th> <th>기준</th> <th>정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 도로, 교량, 보도, 인도, 전신통신선리</td> <td>당해 또는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최근 공시지가</td> <td>5/100</td> <td></td> </tr> <tr> <td>2.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풍동구획 이외 유사한 시설</td> <td>-</td> <td>5/100</td> <td></td> </tr> <tr> <td>3. 가설 건축물 및 기타 유사한 시설</td> <td>-</td> <td>5/100</td> <td></td> </tr> <tr> <td>4. 관공, 관천, 연천소</td> <td>-</td> <td>5/100</td> <td></td> </tr> <tr> <td>5. 각종 시설물</td> <td>-</td> <td>5/100</td> <td></td> </tr> <tr> <td>6. 방갈로, 토지주택, 주택외 임대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td> <td>○ 주택 토지주택: 당해 공시지가에서 차감된 공시가격에 의한 금액 ○ 토지주택임대: 당해 또는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최근 공시지가</td> <td>70/100 5/100</td> <td></td> </tr> <tr> <td>7. 노회 주택상, 전차상</td> <td>당해 또는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최근 공시지가</td> <td>5/100</td> <td></td> </tr> <tr> <td>8. 조수하 구조시설, 전차상</td> <td>당해 또는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최근 공시지가</td> <td>5/100</td> <td></td> </tr> <tr> <td>9. 조수하 구조시설 또는 조수하 구조시설 (취수시설, 관개용수모래취수시설)</td> <td>-</td> <td>5/100</td> <td></td> </tr> <tr> <td>10. 기타 공원접용</td> <td>-</td> <td>-</td> <td>신구조에 준하여 결정함</td> </tr> </tbody> </table> <p>세외지급용 또는 조수하 구조시설 신청수수료: 대면신청시 수입증서로 납부</p>	항목대상	기준	정액	비고	1. 도로, 교량, 보도, 인도, 전신통신선리	당해 또는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최근 공시지가	5/100		2.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풍동구획 이외 유사한 시설	-	5/100		3. 가설 건축물 및 기타 유사한 시설	-	5/100		4. 관공, 관천, 연천소	-	5/100		5. 각종 시설물	-	5/100		6. 방갈로, 토지주택, 주택외 임대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	○ 주택 토지주택: 당해 공시지가에서 차감된 공시가격에 의한 금액 ○ 토지주택임대: 당해 또는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최근 공시지가	70/100 5/100		7. 노회 주택상, 전차상	당해 또는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최근 공시지가	5/100		8. 조수하 구조시설, 전차상	당해 또는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최근 공시지가	5/100		9. 조수하 구조시설 또는 조수하 구조시설 (취수시설, 관개용수모래취수시설)	-	5/100		10. 기타 공원접용	-	-	신구조에 준하여 결정함
항목대상	기준	정액																																																																									
1. 도로, 교량, 보도, 인도, 전신통신선리	당해 또는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최근 공시지가	5/100																																																																									
2.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풍동구획 이외 유사한 시설	-	5/100																																																																									
3. 가설 건축물 및 기타 유사한 시설	-	5/100																																																																									
4. 관공, 관천, 연천소	-	5/100																																																																									
5. 각종 시설물	-	5/100																																																																									
6. 방갈로, 토지주택(타)에 대한 임대료	○ 조경 토지주택: 당해 공시지가에서 차감된 공시가격에 의한 금액 ○ 토지주택임대: 당해 또는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최근 공시지가	70/100 5/100																																																																									
7. 노회 주택상, 전차상	당해 또는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최근 공시지가	5/100																																																																									
8. 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수하 구조시설 및 구조물 구조시설	-	5/100																																																																									
9. 기타 공원접용	-	신구조에 준하여 결정함																																																																									
항목대상	기준	정액	비고																																																																								
1. 도로, 교량, 보도, 인도, 전신통신선리	당해 또는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최근 공시지가	5/100																																																																									
2.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풍동구획 이외 유사한 시설	-	5/100																																																																									
3. 가설 건축물 및 기타 유사한 시설	-	5/100																																																																									
4. 관공, 관천, 연천소	-	5/100																																																																									
5. 각종 시설물	-	5/100																																																																									
6. 방갈로, 토지주택, 주택외 임대 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	○ 주택 토지주택: 당해 공시지가에서 차감된 공시가격에 의한 금액 ○ 토지주택임대: 당해 또는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최근 공시지가	70/100 5/100																																																																									
7. 노회 주택상, 전차상	당해 또는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최근 공시지가	5/100																																																																									
8. 조수하 구조시설, 전차상	당해 또는 인근 유사 토지에 대한 최근 공시지가	5/100																																																																									
9. 조수하 구조시설 또는 조수하 구조시설 (취수시설, 관개용수모래취수시설)	-	5/100																																																																									
10. 기타 공원접용	-	-	신구조에 준하여 결정함																																																																								
<p>(별표 5) 수수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단위기준</th> <th>금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허가 및 위탁 신청</td> <td>200㎡ 미만</td> <td>3,000원</td> <td>수수료는 대면신청시 수</td> </tr> <tr> <td>300㎡ 이상</td> <td>5,000원</td> <td>입증자료 납부함.</td> </tr> <tr> <td>300㎡ 이상</td> <td>10,000원</td> <td></td> </tr> <tr> <td>별용사용허가신청</td> <td>-</td> <td>5,000원</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단위기준	금액	비고	허가 및 위탁 신청	200㎡ 미만	3,000원	수수료는 대면신청시 수	300㎡ 이상	5,000원	입증자료 납부함.	300㎡ 이상	10,000원		별용사용허가신청	-	5,000원		<p>(별표 5) 수수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단위기준</th> <th>금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인, 허가 및 위탁 신청</td> <td>200㎡ 미만</td> <td>9,000원</td> <td>수수료는 대면</td> </tr> <tr> <td>200㎡ 이상 ~ 300㎡ 미만</td> <td>10,000원</td> <td>적합시 수입증서</td> </tr> <tr> <td>300㎡ 이상</td> <td>15,000원</td> <td>로 납부함.</td> </tr> <tr> <td>정용허가신청</td> <td>-</td> <td>8,000원</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단위기준	금액	비고	인, 허가 및 위탁 신청	200㎡ 미만	9,000원	수수료는 대면	200㎡ 이상 ~ 300㎡ 미만	10,000원	적합시 수입증서	300㎡ 이상	15,000원	로 납부함.	정용허가신청	-	8,000원																																							
구분	단위기준	금액	비고																																																																								
허가 및 위탁 신청	200㎡ 미만	3,000원	수수료는 대면신청시 수																																																																								
	300㎡ 이상	5,000원	입증자료 납부함.																																																																								
	300㎡ 이상	10,000원																																																																									
별용사용허가신청	-	5,000원																																																																									
구분	단위기준	금액	비고																																																																								
인, 허가 및 위탁 신청	200㎡ 미만	9,000원	수수료는 대면																																																																								
	200㎡ 이상 ~ 300㎡ 미만	10,000원	적합시 수입증서																																																																								
	300㎡ 이상	15,000원	로 납부함.																																																																								
정용허가신청	-	8,000원																																																																									

關 聯 法 規

都市公園法

第 6 條 (公園管理廳이 아닌 者의 都市公園 및 公園施設의 設置·管理) ①市長 또는 郡守외의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都市計劃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施行者指定과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許可를 받아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을 設置할 수 있으며, 그 設置한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을 관리할 수 있다. <改正 '93·8·5>

第 6 條의2 (公園施設의 安全措置) 第5條第1項, 第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園施設을 관리하는 者는 그 施設의 安全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定期點檢 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3·8·5]

第12條의2 (綠地의 占用許可) ①綠地안에서 綠地의 造成에 필요한 施設외의 施設·建築物 또는 工作物을 設置하거나 土地의 形質變更, 竹木의 代採·栽植이나 土石의 採取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綠地를 관리하는 市長 또는 郡守(이하 “綠地管理廳”이라 한다)의 占用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15條 (占用料의 徵收) ①公園管理廳 또는 綠地管理廳은 第8條第1項 또는 第12條의2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 都市公園 또는 綠地를 占用하는 者에 대하여 占用料를 賦課·徵收할 수 있다. 다만, 私有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8·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占用料의 金額과 그 徵收方法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公園管理廳 또는 綠地管理廳이 속하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3·8·5>

第17條 (負擔金등의 歸屬등) 都市公園 또는 綠地에 관한 負擔金·占用料·使用料 기타 都市公園 또는 綠地에서 생기는 收益은 이를 賦課 또는 徵收한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 다만,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公園 또는 公園施設을 관리하는 者가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경우에는 당해 徵收者의 收入으로 한다. <改正 '93·8·5>

○ 都市公園法 施行令

제 5 조 (점용허가의 신청등) ①법 제8조제1항 또는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점용허가의 내정)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0·9·15, '93·12·27>

1. 전주·전선·변전소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공동구
3. 도로·교량·철도 및 궤도·노외주차장·선착장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
5. 경찰관파출소·초소·표지·등대
6. 삭제 <'90·9·15>
7. 방화용 저수조·지하대피시설
8. 통신시설·축성시설 기타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 8의2.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소유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
9.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
10.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공작물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②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3·12·27>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7호 및 제9호의 시설
2.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5.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

○ 都市公園法 施行規則

제12조 (점용허가신청서)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93·12·30]

[별제 제1호서식] <신설 '93·12·30>

<input type="checkbox"/> 도시공원 <input type="checkbox"/> 녹지		점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1)성명(명칭) (2)주소(소재지)	(3)주민등록번호	
(4)도시공원(녹지)의 명칭 및 위치	명칭 위치		
(5)점용목적 및 대상			
(6)점용장소 및 면적	장소 면적		
(7)점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귀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1부 2. 위치도·지적도 및 평면도: 각 1부 3. 공시시행방법: 1부 4. 원상회복방법: 1부			수수료 없음

30301-16611번
93.12.10 승인

182mm×257mm
(신문용지 54g/m²)

○ 公衆衛生法 施行規則

제15조의2 (유기시설의 안전성 검사) ①영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시설의 안전성 검사에 대한 위탁을 받은 관계전문기관 또는 영업자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의 안전성 검사를 별표 2의2의 검사항목에 의하여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都市計劃施設 基準에 의한 規則

제 8 조 (도로의 종류) ①이 규칙에서 “도로”라 함은 폭 4미터이상으로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81·7·15>

③도로의 규모별 구분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92·12·16>

노 형	세분류	폭	위
소 로	1류	10미터이상 12미터미만	
	2류	8미터이상 10미터미만	
	3류	8미터미만	

○ 地方財政法

第82條 (行政財産 및 保存財産의 管理 및 處分) ①行政財産 및 保存財産은 이를 貸付·賣却·交換 또는 讓與하거나 出資의 目的으로 하거나 私權을 設定할 수 없다. 다만, 그 用途 또는 目的에 障害가 없는 限度내에서 사용 또는 收益을 許可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의 사용 또는 收益을 許可한 경우에는 第83條第2項 및 第8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違背되는 행위는 이를 無效로 한다.

④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의 사용·收益許可를 받은 者가 그 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의 管理를 소홀히 하여 財産上의 損害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使用料 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使用料의 金額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加算金을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84條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行政財産 또는 保存財産으로 계속 存置할 필요가 없는 財産에 대하여는 公有財産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그 用途를 變更하거나 廢止할 수 있다.

第83條 (雜種財産의 管理 및 處分) ①雜種財産은 이를 貸付·賣却·交換·讓與하거나 利權을 設定할 수 있으며, 法令이나 條例로 정하는 경우에는 現物出資를 할 수 있다.

②雜種財産의 貸付·賣却·交換·讓與 및 雜種財産에 관한 사항과 貸付料率·貸付料의 算定方法·價格評定 및 代金納付方法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地方財政法 施行令

제88조 (잡종재산의 대부)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개정 '90·11·6>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②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여 그 범위 및 대부기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3. 건물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제99조 (사용료등의 귀속)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시·군·자치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료·대부료·처분대금·가산금 또는 변상금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 大田直轄市 公有財産管理條例

제 3 조 (관리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산 소재지의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구청장으로 하여금 사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할 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사용료, 대부료, 처분대금 또는 변상금의 교부율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 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②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大田直轄市 公園條例中 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1994. 6. 29.
文教社會 委員會

I. 審 查 經 過

1.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4. 6. 15. 大田直轄市長
2. 回 附 日 字 : 1994. 6. 20.
3. 上 程 日 字 : 第 33回 大田直轄市議會 (臨時會)
第 1 次 文教社會 委員會 (94. 6. 29.)
上程, 審查, 議決

II. 提案說明 要旨 (提案說明 : 環境綠地局長)

1. 提 案 理 由

都市公園法改正('93. 8. 5 法律 第4571號)에 맞추어 綠地의 占用許可對象의 擴大와 對民行政의 便宜圖謀 및 行政能率의 向上을 爲하여 不合理한 事項을 合理的이고 效率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主要 骨 子

- 가. 綠地 的 占 用 許 可 中 地 上 到 設 置 可 能 有 的 是 進 入 道 路 只 是 這 樣 但 是 該 範 圍 具 體 的 擴 大 調 整 (案 第 3 條)
- 나. 公 園 施 設 的 安 定 性 圖 謀 爲 此 爲 期 定 期 點 檢 等 必 要 的 措 置 將 予 確 保 規 定 (案 第 6 條 的 2)
- 다. 公 園 施 設 中 運 動 施 設 的 使 用 場 合 使 用 料 賦 課 徵 收 對 於 大 田 直 轄 市 體 育 施 設 管 理 運 營 條 例 準 據 徵 收 規 定 科 目 合 併 (案 第 12 條 第 2 項)
- 라. 公 園 施 設 中 教 養 施 設 (圖 書 館) 的 新 設 因 此 爲 由 教 養 施 設 使 用 料, 管 理 委 託 料 的 徵 收 規 定 明 確 化 科 目 合 併 (案 第 12 條 第 3 項)
- 마. 公 園 等 的 占 用 · 使 用 料 徵 收 及 公 園 管 理 事 務 所 需 的 經 費 爲 保 障 爲 此 爲 期 當 前 申 請 者 收 入 金 額 的 100 分 之 30 爲 負 担 (案 第 12 條 第 4 項)
- 바. 公 園 占 · 使 用 料 減 免 中 國 家 或 是 地 方 自 治 團 體 直 接 公 用, 公 共 用 或 是 公 益 爲 目 的 使 用 時 占 · 使 用 料 予 以 免 除, 其 他 公 益 事 業 占 用 料 的 2 分 之 1 予 以 減 免 (案 第 14 條)
- 사. 施 設 綠 地 占 用 許 可 申 請 書 及 許 可 證 書 式 樣 本 條 例 中 予 以 削 除 本 條 例 施 行 規 則 中 新 設 施 行 科 目 合 併 (案 第 15 條 的 3)
- 아. 公 園 及 公 園 施 設 使 用 料 及 管 理 費 用 的 種 別 對 於 教 養 施 設 予 以 合 併 (案 別 表 2, 3)
- 자. 都 市 公 園 的 占 用 許 可 及 公 園 施 設 的 人 · 許 可 及 委 託 手 續 料 的 費 用 予 以 合 理 的 調 整 (案 別 表 5)

Ⅲ.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金鎮鎬)

- . 이 改正 條例案은 지난 '93년 8월과 9월에 關聯 上位법인 「都市公園法」과 同法施行令이 각각 改正됨에 따라 이에 맞춰 綠地에서의 占用許可 事項등을 一部 완화키 위한 것으로써 그 主要 內容을 報告드리면 다음과 같음

첫째, 綠地의 占用許可에 관한 事項으로써 綠地地域은 市民의 保健衛生과 公害防止, 其他都市의 무질서한 擴散防止등을 위하

여 都市計劃法 第 17條의 規定에 따라 지정되어지는 것으로써 동 指定目的의 充實한 履行을 위하여 綠地地域내에서의 각종 行爲 또한 엄격히 제한되어 왔음.

그러나 동 地域안에 거주하는 住民들의 生活不便등 많은 民願들이 제기됨에 따라 政府에서는 지난 '93년 12월 27일 都市公園法

施行令의 改正을 통하여 土地의 形質變更, 土石의 採取, 竹木의 代採 및 栽植, 既存 建築物 및 既存 工作物의 改築·再築 또는 大修繕등의 行爲를 할 수 있도록 一部改正한바 있음.

따라서 大田直轄市의 都市公園 및 綠地에 관한 事項을 規定하고 있는 本 條例의 內容에 이에 관한 條項을 追加코자 하는 內容으로써 本 案件 第3條 第1項 第5號가 여기에 該當되겠음.

둘째, 公園施設中 運動施設의 使用許可 및 使用料 徵收에 관한 事項을 一部 調整코자 하는 內容으로써 運動施設의 使用은 體育에 公할 目的으로 使用하여야 하며 使用料는 “大田直轄市 體育

施設管理 運營條例”에서 정한 基準에 準하여 賦課·徵收토록 하고 있음. 이는 第75回 全國體育大會를 對備하여 公園地域내에

新設된 사이클 경기장, 승마장등의 效率的인 使用料 徵收를 위한 것으로 判斷되며

기타 公園施設의 使用料 및 委託 手數料, 占用料 徵收에 관한 業務를 區廳長에게 委任한 境遇에는 그 徵收한 金額의 100분의 30에 該當하는 金額을 徵收 交付金으로 交付토록 하였는바 이는 “地方財政法” 및 “大田直轄市 公有財産管理條例”에서 정한 交付率의 例에 따른 것으로써 별다른 問題點은 없는 것으로 思料됨.

셋째, 本 條例에서 使用되고 있는 用語整備 및 手數料 引上에 관한 事項으로써

綠地의 占用に 관한 事項이 지난 '90년 9월 15일 都市公園法 施行令에 新設됨에 따라 本 條例에 綠地에 관한 事項을 追加 (第3條, 第15條의 2등)하였으며 使用用語中 “비행정청”을 “公園管理廳이 아닌 者”, “受許可者”를 “許可를 받은 者” 등으로 表記하므로써 그 意味를 보다더 明確히 하도록 하였음.

其他 公園 및 綠地關聯 各種 인·허가시 징수케 되는 手數料를 一部 引上코자 하는바 이는 從前의 手數料가 지난 1987년 策定된 金額으로 現實에 맞지 않아 그간의 物價上昇등을 考慮 原價分析 등을 통한 手數料 徵收의 현실화를 위한것으로써 별다른 問題點은 없는 것으로 思料됨.

- . 以上에서와 같이 本 「大田直轄市 公園條例中 改正 條例案」은 關聯上位법인 「都市公園法」등의 改正에 따라 綠地地域內에서의 占用許可基準緩和등이 그 主要內容으로써 별다른 問題點은 없는 것으로 思料되나 公園地域 또는 綠地地域내에 居住하고 있는 住民들의 生活不便에 따른 強度높은 民願提起등을 勘案할 때

이들 居民들이 최소한의 生活을 營爲할 수 있는 方案등이 持續적으로 講究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됨.

IV. 討 論 要 旨 : 없 음

V. 質 疑 및 答 辯 要 旨 : 없 음

VI. 審 查 結 果 : 原案대로 可決

VII. 其 他 必要한 事項 : 없 음